

1. 개정이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에 있어서 피부양자 자격의 상실시기를 명확히 하고,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폐업 사실의 입증 없이도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피부양자 자격의 상실시기
명확화(안 제2조제3항제9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날에 상실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

나.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 조정 이후에 사업소득등의 발생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상실시기 명확화(안 제2조제3항제10호)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 조정 이후에 발생한 사업소득등으로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 영 제41조의2제3항 또는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등의 발생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날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2) 영 제41조의2제3항 또는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등의 발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

다.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 시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서류’의
제출 제외(안 제2조제4항제3호, 별지제1호서식)
별표1의2에 따른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폐업
사실 입증 여부와 상관 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입증서류 제출에 관한 근거 규정을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2. . ~ 4. .) 결과,
3) 행정규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9호 중 “다음 날”을 “다음 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 신청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9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41조의2제3항 또는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등의 발생을 신고하여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를 조정한 이후에 발생한 사업소득등을 영 제41조의2제3항 또는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으나 사후적으로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제2조제4항제3호 중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별지제1호서식 중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도시 및 주거환

정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제3호 및 별지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부양자 자격 상실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 신청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제3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의 조정 또는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기관)	① 사업장 관리번호			② 사업장 명칭			③ 전화번호			
가입자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⑥ 전화번호			
피부양자	⑦ 관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⑩ 취득(상실) 년월일	⑪ 취득(상실) 부호	⑫ 장애인·국가유공자 종류 부호 등록일		⑬ 외국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6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뒤쪽)

첨부서류	1. 피부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별표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피부양자가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4.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한 피부양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자격취득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재외국민: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외국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그 밖의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나. 자격상실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 위 첨부서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통해 공단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①~③: 사업장 및 기관(학교)의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및 사업장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④~⑥: 직장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⑦: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며느리, 증조부모, 계자(繼子), 친생자녀, 친생부모, 시조부모, 처조부모, 손녀사위, 손자며느리 등
- ⑧~⑩: 신고 대상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및 취득(상실) 연월일을 적습니다.
- ⑪: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취득 또는 상실 사유의 부호를 적습니다.
- ※ 취득 사유<부호>: 출생<03>,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04>, 직장가입자 변경<05>, 피부양자 상실<06>, 지역가입자에서 변경<07>
- ※ 상실 사유<부호>: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거주불명 등록<14>, 국적 상실<17>, 외국인(재외국민)으로서 출국<18>, 이민출국<19>, 행방불명<21>, 기타<13>
- ⑫: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6·18자유상이자를 포함합니다)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장애 종류 및 국가유공자 등의 부호와 그 등록일을 적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 장애 종류 및 국가유공자 등<부호>: 지체장애인<01>, 뇌병변장애인<02>, 시각장애인<03>, 청각장애인<04>, 언어장애인<05>, 지적장애인<06>, 자폐성장애인<07>, 정신장애인<08>, 신장장애인<09>, 심장장애인<10>, 호흡기장애인<11>, 간장애인<12>, 안면장애인<13>, 장루·요루장애인<14>, 뇌전증장애인<15>, 국가유공자 등<19>
- ⑬: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및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유의사항

※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접수 및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고서 처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변경 확인 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령

신고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② (생 략)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③ -----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날의 <u>다음 날</u>	9. ----- ----- ----- <u>다음 날(거짓이</u> <u>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u> <u>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소</u> <u>득월액의 조정 신청, 영 제42</u> <u>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u> <u>수의 조정 신청 또는 이 규칙</u> <u>에 따른 피부양자의 자격취득</u> <u>신고를 하여 피부양자 자격을</u> <u>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u> <u>취득한 날로 한다)</u>
<신설>	10. <u>제9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41</u> <u>조의2제3항 또는 영 제42조제</u> <u>2항에 따라 사업소득등의 발</u> <u>생을 신고하여 제1항에 따른</u> <u>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u>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를 조정한 이후에 발생한 사업소득등을 영 제41조의2제3항 또는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으나 사후적으로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④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거나 피부양자가 제3항제8호에 따른 자격 상실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자격 취득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④

1. · 2. (생략) 3. <u>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피부양자가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u>	1. · 2. (현행과 같음) 3. <u>「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u> ----- ----- ----- ----- ----- ----- ----- -----
--	---